

**유럽연합**

# 사법재판소, 잊혀질 권리는 EU 역외에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

**박형욱** (디자인지식재산컨설팅 대표)

유럽사법재판소는 2019년 9월 24일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가 잊혀질 권리를 EU 역외까지 적용하지 않은 구글에 1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구글이 벌금 부과 취소를 요청하며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프랑스 국무원(FCS)이 선결 요청한 잊힐 권리의 영토 범위는 EU 역내에서만 적용된다고 판결함.

**배경**

- 2015년 5월 21일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CNIL)는 개인의 이름을 검색한 후 표시되는 결과 목록에서 특정 링크의 삭제를 요청하는 자연인에 대하여 구글은 검색엔진의 모든 버전에서 링크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공식통지를 함.
- 구글은 CNIL의 공식통지의 준수를 거절하였고, 회원국의 검색 엔진 버전에 해당하는 도메인 이름에서 수행된 검색에 표시된 결과에서만 문제의 링크를 제거함.
- CNIL은 2016년 3월 10일 구글의 추가적인 지역차단(geo-blocking) 제안에도 불구하고 10만 유로의 벌금을 구글에게 부과함.

- 구글은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무원(Council of State, France: FCS)<sup><1></sup>에 CNIL의 결정취소를 요청하는 항소를 제기함.
- FCS는 “잊혀질 권리로” 널리 알려진 “right of de-referencing”의 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 요청하며 질문을 함.

### 요청 질문

- 2014년 5월 13일 구글 스페인과 구글의 사건<sup><2></sup>에서 유럽사법재판소가 “잊혀질 권리”를 지침 95/46의 제12조 b(‘Right of access’: 정보 요청권)와 제14조 제a항(‘The data subject’s right to object’: 데이터주체의 이의 제기권)에 근거하여 내린 판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함:
  - (1) 검색엔진 운영자가 요청자의 이름을 기준으로 검색이 시작된 위치와 상관없이 문제의 링크가 검색엔진의 모든 도메인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삭제해야 하는지, 지침 95/46의 영토 범위(EU) 밖에서 행하여졌을 때에도 링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
  - (2) a) 요청이 된 국가에 해당하는 도메인에서만, 또는 b) 모든 회원국 검색엔진까지 확장되는 도메인에서 문제되는 결과들을 삭제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 (3) 검색을 수행하는 이용자가 사용하는 도메인에 상관없이 “지역 차단” 기술을 사용하여 문제가 되는 결과를 제거해야 하는지

<1> 콩세이 데타(Conseil d’État) 참사원 이라고도 부름.

<2> Google Spain and Google v. AEPD, Mario Costeja González (C-131/12, EU:C:2014:317).

##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 유럽사법재판소는 개인정보보호지침 95/46과 EU 개인정보보호규정 2016/679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자연인의 보호 및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EU지침을 폐지하며 2018년 5월 25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규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고려함.
- 검색엔진 운영자는 잊혀질 권리가 제출한 “삭제 요청”을 수신하고 해당 요청을 승인할 때 전 세계 모든 버전의 검색 엔진의 운영자가 “삭제”를 수행할 필요는 없고 유럽 회원국에 해당하는 버전에만 삭제를 적용하면 된다고 판단함.<sup><3></sup>
  -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프랑스에 있는 구글의 영업소 (establishment)는 상업적이고 광고목적의 활동을 수행하며, 이는 관련 검색엔진을 운영하기 위해 수행된 개인의 데이터 처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판단함.
  - 또한 구글이 다양한 국가별 검색엔진을 가지고 있고 그 버전 간에 게이트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글 프랑스가 프랑스 검색엔진 내 데이터를 삭제하면 모든 검색엔진에서도 삭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함.
- FCS가 제기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질문인 검색엔진 운영자가 “지역 차단”기술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음. 대신 검색엔진 운영자는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서도 인터넷 사용자가 데이터 주체 이름을 기준으로 검색하여 얻은 결과 목록을 통하여 삭제요청의 주체에 대한 링크에 접근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적어도 정당하게 방해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판단함.

<3> Google v. CNIL., (C-507/17, ECLI:EU:C:2019:772).

## 결정의 이행

- 삭제 요청이 승인되면, EU 회원국의 도메인 버전에서 문제의 링크에 액세스할 수 없어야 하므로 검색엔진이 해당 링크를 삭제해야 함.
- 필요한 경우 검색엔진 운영자는 인터넷 사용자가 문제된 콘텐츠와 관련된 링크에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방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판결의 영향

- 검색엔진 운영자가 아닌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관은 온라인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 지리적 확장이 필요한 도메인으로 유사하게 나뉘질 경우 개인 데이터의 높은 수준의 보호를 위하여 GDPR을 준수해야함.
-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는 제3국가가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EU 외부에서 GDPR에 의해 제공하는 데이터 보호의 효과를 확장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음.

## 평가

- “잊혀질 권리”의 EU 개념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와 상충되므로 미국 법원의 정보 검열을 허용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사생활 보호와 언론의 자유 사이에서 어떤 권리가 우월할지 미국 법원은 판례별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임.
- 유럽사법재판소가 “잊혀질 권리”가 인터넷의 국경 없는 특성으로 인하여 전 세계 삭제를 통해서만 진정으로 보호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EU 역외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은 개인정보보호와 권리 혹은 공익의 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Non-EU 국가의 법적 틀과 가치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유럽사법재판소가 EU법이 검색엔진의 모든 버전에서 삭제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금지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함에 따라, EU 회원국의 감독 당국이나 사법 당국은 기본권의 보호에 대한 국가 표준에 비추어 개인 데이터의 프라이버시와 보호에 대한 데이터 주체의 권리와 다른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균형을 맞춰 검색엔진의 삭제를 수행할 것 임. 따라서 검색엔진 운영자는 국가 감독 기관이 검색엔진 운영자가 준수해야하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전에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에 대한 약간의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을 가질 것임.

## ※ 참고 자료

<https://www.ipwatchdog.com/2019/10/16/global-implications-cjeus-ruling-google-right-forgotten-case/id=114609/>

<http://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218105&pageIndex=0&docla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3763833>

**프랑스**

## 법원, 게임 다운로드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받은 비디오 게임에 대해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된다

김혜성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게임 다운로드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받은 비디오 게임에 대해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프랑스 파리 지방 법원은 2019년 9월 17일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용자가 다운로드 받은 비디오 게임에 접근하여 이용할 권한을 양도하지 못하게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사실관계 및 사건의 전개

- Valve는 이용자가 비디오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비디오 게임 배포 플랫폼인 ‘Steam’을 운영하는 회사임.
- Steam 이용약관(Subscriber Agreement) 제1조 제C항은 Steam 이용자가 Steam에서 다운로드 받은 비디오 게임을 이용할 권한인 구독 이용 권한을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 이용약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 이용 권한을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함.
- 프랑스 소비자단체인 UFC Que Choisir(이하 ‘UFC’)는 Steam 플랫폼 이용약관 제1조 제C항이 권리 소진의 원칙에 반해 저작권법에 위반되므로 개정되거나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 **쟁점**

- 저작권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다운로드 방식으로 저작물의 사본을 제공 또는 그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도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관련 규정**

- 2001/29/EC 저작권 지침 제4조 제2항은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이 권리자 또는 그의 동의하에 유럽공동체 내에서 최초 판매되거나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럽공동체 내에서 그 저작물의 배포권은 소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2009/24/EC 컴퓨터 소프트웨어 지침 제4조 제2항은 저작권자에 의해서 또는 그의 동의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이 유럽공동체 내에서 최초로 판매된 경우, 유럽공동체 내에서 그 복제물의 배포권은 소진된다고 규정함.
- 프랑스 저작권법
  - 프랑스 저작권법 제122조의3의 1은 저작자 또는 그의 저작권 양수인으로 부터 허락을 얻어 어느 저작물의 하나 또는 수 개의 복제물이 유럽공동체나 유럽경제공동체의 어느 특정 회원국 내에서 최초로 판매되면, 그 이후 부터는 유럽공동체나 유럽경제공동체의 모든 회원국에서 당해 저작물의 복제물을 계속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제112조의6 제3호 단서는 유럽공동체의 어느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공동체의 역내에 있는 어느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저작자에 의하여 또는 그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행한 소프트웨어의 복제물의 최초의 판매로 장래 유럽공동체의 모든 회원국내에서 동일 복제물의 대여를 허락하는 권리를 제외하고, 판매하는 권리는 소진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1>

-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Paris Tribunal de grande instance)은 2001/29/EC 저작권 지침 및 2009/24/EC 컴퓨터 소프트웨어 지침의 권리 소진의 원칙은 유형(tangible) 매체 형태의 저작물인지 아니면 무형(intangible) 매체 형태의 저작물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므로 게임 다운로드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받은 비디오 게임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함.
- 소프트웨어의 유형 저장 매체(tangible medium) 뿐 아니라 웹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installation)한 것도 프랑스 저작권법 제122조의3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제물(material copy)’에 해당함.
- 이용자는 무제한의 기간 동안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이용자가 Steam 플랫폼 게임 이용에 가입(subscribe to the game)한 것은 사실상 게임을 구입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 따라서 배포권의 소진 원칙(exhaustion of the distribution right)은 다운로드를 통해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비디오 게임을 전송한 경우에도 적용됨.
- 그러므로 비디오 게임의 최초 판매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합법적인 다운로드 방식으로 행해진 경우에도 저작권자는 더 이상 해당 저작물 사본의 재판매를 금지할 수 없음.

## 평가 및 전망

- 이 판결은 CJEU가 2012년 UsedSoft 사건에서 인정한 권리 소진의 원칙 적

---

<1> UFC Que choisir c. Valve Corp, RG n°16/01008(TGI de Paris, 4ème chambre, Sep. 17, 2019)



용을 비디오 게임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한 혁명적인 판결로 평가됨.

- 항소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이 판결로 온라인 다운로드 플랫폼에서 비디오 게임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가 해당 게임 파일을 재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정됨.

## ※ 참고 자료

<https://www.doctrine.fr/d/TGI/Paris/2019/U7B6A7E5356C58F4136C7>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85c1d551-7480-4407-8846-be866719e431>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ea8240b5-ff78-4788-8a19-abad71d2e859>

**프랑스**

# Hadopi,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불법 영상저작물 유통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다

**박성진** (남트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수료)

Hadopi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저작물의 불법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서, 이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꼽음.

## 연구배경

- 프랑스의 인터넷 이용자 중 89%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계정을 가지고 있음.
  - Hadopi<sup><1></sup>는 SNS가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 콘텐츠 및 저작물의 소비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분석함.
- 저작물 소비 현상에 이와 같은 변화가 있음에 따라, Hadopi는 2019년 10월 17일, SNS 상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영상저작물에의 접근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함.
  - 단, 이 연구는 프랑스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장 즐겨 이용하는 유튜브 (Youtube),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그리고 레딧(Reddit), 총 4개의 SNS 플랫폼에 한정하여 진행됨.

<1> 인터넷 상의 저작물 배포 및 창작물 보호를 위한 최고기관 (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œuvres et la protection de la création sur internet)

## SNS 상에서의 저작물 불법이용 현황

- Hadopi는 “SNS를 통한 저작물의 불법적인 소비”를 두 가지로 행태로 구분함 :
  - 첫 번째는 권리자의 이용허락 없이 업로드 된 저작물 전체를 SNS 플랫폼 상에서 무상으로 직접 소비하는 이용행태이며<sup><2></sup> ;
  - 두 번째는 제3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불법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해서 SNS 에 게재된 링크를 클릭하는 이용행태임.
  - 첫 번째 이용행태와 비교했을 때, 두 번째 이용행태는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에서 첫 번째 이용행태 (각각 53%, 29%, 11%)보다 압도적인 수치(각각 75%, 86%, 97%)로 저작물 불법이용이 자주 행해짐.
- 한편 조사 연령층을 15세 이상으로 한정했을 때, 이들 중 16%가 주기적으로 불법적으로 영상저작물을 소비함.
- 나아가 이 보고서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와 같은 불법적 소비를 행하는 것은 ‘주기성’을 띠는 것으로 정의함.
  - 조사의 표본 집단을 “주기적으로 불법 영상저작물을 소비하는 자”로 한정하는 경우, 연령층과 상관없이 프랑스의 인터넷 이용자 중 8%가 첫 번째 이용행태를, 그리고 12%의 인터넷 이용자가 두 번째 이용행태를 행하고 있음.
- “SNS를 통한 저작물의 불법적인 소비”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 이 보고서는 저작물 전체에서 발췌된 일부를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의함.

## 불법행위를 통해 이용되는 영상저작물의 종류

- 유튜브 플랫폼에서는 영화저작물(62%)이 가장 자주 불법적으로 소비되는 영상저작물의 종류이며, 스포츠 직접 중계 영상저작물(56%)과 텔레비전 시리즈(54%)가 그 뒤를 이음.
- 이와 달리, 페이스북(68%)과 트위터(70%)의 경우, 스포츠 직접 중계 영상저작물이 가장 자주 불법적으로 소비되는 플랫폼임.
  - 페이스북의 경우, 영화저작물(54%)과 텔레비전 시리즈(51%)가 그 다음으로 자주 소비되는 영상저작물의 종류임.
  - 반대로 트위터의 경우, 스포츠 직접 중계 영상저작물에 이어 텔레비전 시리즈(53%)와 영화저작물(49%)의 순서로 소비됨.

## 불법행위 발생의 원인

- SNS를 통해서 영상저작물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까닭은 해당 행위를 하는 이용자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음.
- 첫 번째 특성은 이용자들의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낮고 도시 거주자들이 주를 이룬다는 것임.
  - 이들은 권리자들이 이용허락을 한 정식 플랫폼에 가입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높다고 느낌 (36%).
  - 이들은 시청하고자 하는 영상저작물들이 하나의 플랫폼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영상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개의 플랫폼에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가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낀다고 지적함 (25%).
- 한편 이러한 현상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SNS 인터페이스의 특성에서도 찾을 수 있음.

- 이 연구의 대상인 네 개 SNS의 인터페이스가 세련되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성을 자각하기 어려움.
- 뿐만 아니라 SNS의 인터페이스가 단순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저작물을 검색하기 더욱 편리하다는 점도 이러한 형태의 이용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임.
- 따라서 Hadopi는 SNS가 현재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단일창구<sup><3></sup>로서 기능한다고 정의함.

## ※ 참고자료

<http://bit.ly/2JkncGG>

---

<3> Point d'entrée unique permettant une multiplicité d'usage

**중국**

# 공동저작자 중 일부만이 공동저작물 침해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음

**박다현**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석사과정)

공동저작자 중 1명이 공동저작물에 대해 권리침해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공동저작물 중 일부에 대해서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공동저작물에 대해 권리침해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결.

## 사실관계

- 이 사건의 원고는 <모란지가>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북경 중득문화전파유한공사(北京众得文化传播有限公司, 이하 원고회사)이며, 피고들은 <오환지가>를 부른 유에룡강(岳龙刚)과 <오환지가> 노래를 영화음악으로 사용한 완다(万达), 신리(新丽), 진후리(金狐狸)회사임.
- <모란지가>는 영화 <붉은모란(红牡丹)>의 주제곡으로 1980년 여원(吕远)과 당가(唐诃)가 멜로디를, 조우(乔羽)가 가사를 씀. 조방(乔方)은 유명 작곡가임.
- 2018년 4월 5일, 조우는 조방에게 <모란지가>의 저작권을 양도하겠다는 수권서를 내고, 같은 해 4월 8일, 조방은 <모란지가>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전송권, 공연권, 복제권(중국: 개편권, 정보통신망 전파권, 실연권, 복제권)을 배타적으로 ‘여러 회사’에 양도하겠다는 수권서를 냄. 2018년 10월 20일, 조우는 <모란지가>의 공동저작자로서 가질 수 있는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일체를 조방에게 배타적으로 부여함.

- 원고회사는‘여러 회사’중 하나로 <모란지가>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비롯한 저작물의 재산권을 가짐.

## 1심

- 원고회사는 유에롱강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독단적으로 <모란지가>를 각색하여 <오환지가>를 영리적으로 공연했다는 것과 완다, 신리, 진후리회사가 촬영한 <전병협(煎餅俠)>이라는 영화의 배경음악과 홍보영상에 <오환지가>를 사용했음을 알고, 천진시빈하이신구인민법원(이하 빈하이인민법원)에 1심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법원에 영화 <전병협>의 46~51분 사이(약 5분)에 사용된 나오는 <오환지가> 사용중지 및 홍보용 뮤직비디오 유포 중단과 함께 100만 위안의 경제적 손해배상과 합리적 비용 10만 2500위안을 배상을 청구함.
- 완다, 신리, 진후리 회사와 유에롱강 네 피고는 <오환지가>는 멜로디와 가사가 분할 가능하다고 항변하였으나, 원고회사는 <오환지가> 멜로디는 저작권이 없으며 단지 피고들은 가사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빈하이인민법원은 <모란지가>는 영화 <붉은모란>을 위해 만든 작품이며, 작품의 완전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여원과 당가는 이 노래의 멜로디에 대해, 조우는 가사에 대해 각각 저작권을 가진다고 봄.
- 1심에서는 멜로디에 대한 판단을 제외하고 가사만 두고 판단함. 두 작품의 제목은‘지가(之歌)’라는 두 단어가 같지만 이는 상투적인 표현으로 노래의 핵심 내용을 다르다고 봄. 두 노래를 비교해보아도‘啊(아하, 오)’의 어미만 비슷할 뿐 <오환지가>의 가사 중에 <모란지가>의 독창적인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비슷하게 사용한 부분이 없음. 또한 <오환지가>는 <모란지가>와 다르게 노래에 랩이 들어가서 독창적인 표현부분이 존재함.
- <오환지가>의 영감과 소재가 <모란지가>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혹은 <모란지가>에 대응되는 부분이 악보에 존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모란지가>를

떠올리게 한다고 해도, 피고들은 <모란지가>의 곡을 사용하지 않았고 가사만 보아도 <모란지가>를 각색한 부분이 없으므로 법원은 피고들이 <모란지가>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여 원고회사의 소송을 기각함. 원고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천진3중급인민법원에 항소함.

## 쟁점

- 중국저작권법 제13조
  - 공동저작물(合作作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저작자는 각자 창작한 부분에 대하여 단독으로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고, 다만 저작권을 행사할 때에는 공동저작물 전체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없음.

## 2심

- 원고회사는 자신들이 <모란지가>의 저작권자로 <모란지가>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 또한 <오환지가>가 <모란지가>의 멜로디와 유사함을 명백히 알 수 있고, 가사 역시 모란에 대한 찬사에서 교통체증에 대한 원망으로만 내용이 변형되었음을 설명하며 <모란지가> 전체(멜로디와 가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함.
- 피고들은 원고는 가사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가진 공동저작자의 일부에 불과하고, 노래 전체에 대한 저작권이 없으므로 노래 전체가 침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래 전체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함. 또한 유예롱강은 <오환지가>를 불렀을 뿐 2차 창작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2심 법원은 <모란지가>는 공동저작물(合作作品)로 당가와 여원(멜로디), 조우(가사)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함.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동저작물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며 분리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법원은 원고는 <모란지가>의 가사에 대한 저작권자 중 하나에 불과하여 <모란지가> 노래 전체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해 주장할 수 없으며, 또한 <오환지가>는 <모란지가>와 멜로디와 가사내용이 다른 독립적인 저작물이라고 판단함.
- 2심 법원은 피고들이 <모란지가>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며 1심 원심판결을 확정함.

## 평가 및 전망

- 원고는 노래 가사의 공동저작자로서 가사부분에 대해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노래 전체(멜로디와 가사)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또한 가사만 두고 본다고 해도 1심판결과 같이 <모란지가>와 <오환지가>의 가사는 비슷하지 않다고 볼 가능성이 큼.

## ※ 참고 자료

<https://cbgc.scol.com.cn/news/184649>

<https://finance.jrj.com.cn/2019/10/14155028243322.shtml>

<http://www.bjnews.com.cn/news/2019/10/14/636381.html>

**중국**

## 법원, 블로그의 배경으로 만화가에 작품을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

백지연 (북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피고가 SNS에 기사의 자료사진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게시한 행위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고의성이 있고 상업적인 이용에 해당하므로 공정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 사건의 경과

- 원고 주씨는 중국 내 유명 만화가임. 피고 회사는 시나 웨이보(新浪微博)<sup><1></sup> 플랫폼을 통해 팔로워들을 대상으로 제품 홍보 및 브랜드 홍보를 진행하고 있음. 피고 회사는 원고의 만화작품의 일부를 자사 홍보기사의 자료사진으로 활용함.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신의 작품을 기사의 자료사진으로 사용했으며 피고의 회사 서명 및 광고 문구와 같이 게재되었음을 발견함. 이에 대해 원고 주씨는 피고의 팔로워 수가 많고 이미 다수의 팔로워들에게 공유되었으므로 침해 피해가 크다며 피고를 자신의 성명권 및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로 소를 제기함.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 웨이보 플랫폼의 메인 페이지와 “중국청년보” 등의 신문에 30일 연속 사과 성명을 게재할 것과 침해 비용 30만 위안(한화 약 5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 이에 대해 피고는 웨이보 플랫폼에 사용된 사진은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이고, 검색 엔진에서 해당 사진을 검색할 당시 작가의 서명 혹은 사진의 출처가

<1> 시나닷컴에서 서비스하는 단문SNS서비스, 중국판 트위터.

나와있지 않아 해당 사진의 저작자가 원고 주씨임을 특정할 수 없었으며,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함. 또한, 피고 자신의 웨이보 계정은 여러 신문 기사 등을 공유해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농촌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정이므로 상업적 의도가 전혀 없음을 주장함.

## 법원의 판단 <2>

- 북경시 해전구 인민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전자 증거로 미루어 보아 해당 사진에 원고 주씨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으며, 피고 회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해당 사진을 자신들의 웨이보 플랫폼에 게재한 기사들의 자료 사진으로 사용한 것은 계정의 운용 취지가 상업적 이용인지 여부를 떠나 고의성이 있으므로 공정이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성명권 및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함.
- 다만 본 안의 웨이보의 게재 글의 공유 횟수, 답글 수, 좋아요 수가 현저하게 낮고, 원고가 해당 게재 글의 사회적 영향력이 넓은 것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피고가 해당 글을 바로 삭제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고가 원고에게 대면 사과 한 것으로 충분하고 금전적 피해 보상으로는 27000위안(한화 약 4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함.

## 평가 및 향후 전망

- 본 판결은 2017년 중요 판례인 ‘만화가와 알리바바의 웨이보 저작권 침해 사건’<sup>\*3></sup>과 같은 맥락의 사건으로 북경시 법원이 이와 같은 위 미디어(We

<2> 북경시해전구인민법원(2019)경 0108민초3482호 판결문

<3> 본 판결과 유사한 사건으로 만화가인 원고가 피고인 알리바바를 본인의 작품을 피고의 상업활동에 활용하였음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로 기소해 원고 승소한 사건.

Media)를 통한 저작권 침해 사건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 북경시 법원은 이와 같은 위 미디어 침해 사건에 대해 계정의 운용 취지가 상업적인지 아닌지를 떠나 해당 게재물이 공중에 전파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 ※ 참고 자료

<http://www.iprlawyers.com/index.php/Portal/Index/show/id/1025>

[http://www.iprchn.com/Index\\_NewsContent.aspx?NewsId=103844](http://www.iprchn.com/Index_NewsContent.aspx?NewsId=103844)

**일본**

#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및 그 추진 일정 공개

권용수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지식재산전략본부는 내각부, 경찰청,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에서 담당할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대한 종합 대책 및 그 추진 일정을 공개함.

##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 및 추진 일정 공개

-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19년 10월 18일 내각부, 경찰청,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에서 담당할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대한 종합적 대책 및 공정표’(インターネット上の海賊版に対する総合的な対策メニュー及び工程表)를 공개함.

## 1 단계 : 가능한 것부터 즉시 추진

- 저작권 교육 및 의식 계몽
  - 민관이 협력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저작권 교육·의식 계몽을 실시함.
  - [총무성] 출판업계와 협력해 안전한 인터넷 이용에 관한 교육·계몽을 목적으로 학교 등의 현장에 출장 교육을 하고, 정보통신분야 등의 기업·단체와 총무성·문부과학성이 협력해 전국에서 불법 복제 등 저작권 관련 계몽을 실시

- [문부과학성] 공무원, 교직원, 도서관 등 직원을 위한 저작권 강습회를 개최하는 것 외에, 공동 개최를 희망하는 지방 정부와 연계해 저작권 세미나를 개최함. 또한, 2018년 10월에 해적판 계몽 포스터를 작성해 전국의 36,845교에 배포하였고, 2019년에는 문화청 웹사이트에 저작권 교육 교재를 통합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페이지를 작성하는 등 효과적인 보급·계몽을 추진함.
- [경제산업성] 출판광보센터가 만화 인기 순위를 이용한 ‘STOP! 해적판’ 캠페인을 실시하고, 지난 7월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 함. 또한 콘텐츠 해외유통촉진기구(CODA)가 한중일 유명 캐릭터를 이용한 포스터 및 동영상을 활용해 계몽활동을 실시함.

○ 정품 유통 촉진

- 해외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면서 이용자가 접근하기 편한 형태로 콘텐츠 정품을 유통시키기 위해 민간주도의 협력관계 구축을 도모함.
- [경제산업성] 출판광보센터가 전자중개사업자나 전자서점의 협력을 얻어 정품 전송 사이트 등에 표시하는 ABJ(Authorized Books of Japan) 마크 운용을 통해 화이트리스트를 작성·공표함.<sup><1></sup>

○ 해적판 사이트 대책 전담 조직 설치

- 각각의 인터넷상의 해적판 특징에 따른 최적의 대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문적 지견을 모아 해적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주도의 협력관계 구축을 도모함.
- [총무성] 권리자 측과 통신사업자 측이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양자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실시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 구체적인 협력·연계 조직 사례로 출판광보센터가 추진한 ‘STOP! 해적판’ 캠페인에 통신업계가 동참하도록 지원함.

<1> 2019년 6월 27일 기준 599 서비스, 141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음.

- [경제산업성]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광고 억제에 대해 CODA와 광고 관련 3단체의 합동회의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해적판 사이트 리스트 공유 등을 실시함.
- 국제 연계 및 국제 집행 강화
  -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을 고려하면서 민간사업자 등이 외국에서 민사절차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고, 국제수사공조를 한층 강화함.
  - [경찰청] 국경을 초월한 해적판 범죄에 국제수사공조 체제를 활용해 대처함. 특히 상호교류가 활발한 국가나 지역과는 국제수사공조의 신속화·효율화를 위해 개별적으로 형사공조조약을 체결하고 있음.<2>
  - [법무성] 베트남과 형사공조조약 신규체결을 위한 교섭을 추진함.
  - [경제산업성] CODA를 통해 ① 침해 국가의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 ② 각 국의 권리자단체와 협력해 침해 국가의 수사기관에 단속 강화 요청, ③ 권리자와 협의한 후 위법 판매업자 등에 대한 공동 집행을 실시함.
- 검색 사이트 대책
  - 해적판 사이트 검색 결과로부터의 삭제·표시 억제에 관해 저작권자 등과 검색사업자의 협력을 추진함.
  - [문부과학성] 2019년 2월 권리자단체 및 인터넷정보검색서비스사업자의 협의 및 대책을 담은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보고서’를 공개하고, 문화심의회에서 협의 진행 상황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
-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광고 억제
  - [경제산업성] 일본 인터랙티브광고협회가 지난 4월 광고 대상 선정 가이드라인을 책정·공표하였고, CODA와 광고 관련 3단체의 합동회의를 통해 해적판 사이트 리스트 공유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

<2> 지금까지 미국, 한국, 중국, 홍콩, EU 및 러시아와 형사공조조약을 체결함.

○ 필터링

- [총무성] 휴대전화사업자 등이 강화된 필터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요청하고, 필터링에 관한 의무와 보호자의 역할 등을 설명하는 자료 배포 및 출장강좌 등을 실시함. 또한 ‘청소년 안심·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에 관한 태스크포스’에서 지난 8월에 정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필터링 이용 촉진을 위한 대책이나 관계사업자와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향상 대책 등을 추진함.
- [경제산업성] CODA와 일본네트워크보안협회의 협력을 통해 CODA가 해적판 사이트 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 등이 해당 리스트 필터링에 활용하기 위한 연계 체제를 구축함.

**2 단계 : 도입·법안제출을 목표로 준비**

○ 접근 경고 방식 도입

- [총무성] ‘인터넷상의 해적판 사이트에 대한 접근 억제 대책에 관한 검토회’를 개최하고, 접근 경고 방식 실시를 전제로 한 법적 정리, 기술적 가능성, 효과적 대책에 관한 검토를 함.
- 총무성은 지난 8월 공개된 검토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개별 동의를 전제로 한 접근 경고 방식 실시의 기술검증을 추진하는 한편, 이용자의 의식이나 의향, 기술동향·비용동향 등 접근 경고 방식을 둘러싼 상황 파악에 힘씀.

○ 인터넷 이용자를 침해 콘텐츠로 유도하는 리치사이트 대책

- [문부과학성]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기본문제소위원회에서 검토하여 2019년 2월 보고서를 정리하고, 법안 제출을 목표로함.

○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지화면 다운로드(DL) 위법화

- [문부과학성] ‘심각한 해적판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



과 ‘국민의 정당한 정보 수집 등에 위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염두에 두고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함.

- 문화청은 지난 9월 30일 DL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결정하고, 신설하는 전문가검토회의 논의를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 DL 위법화를 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확정함.

### 3 단계 : 다른 대책의 효과나 피해 상황 등을 보면서 검토

#### ○ 사이트 블로킹

- [내각부 및 관계성청] 사이트 블로킹에 관한 법제도 정비는 위헌가능성이나 찬반의 첨예한 대립 등을 이유로 다른 대책의 효과나 피해 상황을 등을 보면서 검토 여부를 결정함.

### ※ 참고 자료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chitekizaisan2019/pdf/kaizoku\\_taisaku.pdf](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chitekizaisan2019/pdf/kaizoku_taisaku.pdf)

<https://www.jiji.com/jc/article?k=2019093000902&g=eco>

**브라질**

## 리우데자네이루 주법원, 호텔 내 객실에서의 TV 및 라디오 사용은 저작권료 청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함

**이동규** (칠레대학교 국제학 석사과정)

리우데자네이루 주법원은 브라질 음악저작물 집중관리단체가 호텔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객실 및 호텔 내 공용공간에 설치된 TV나 라디오 장비를 통해 공중송신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및 예방 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해당 공간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장소에 해당되지 않아 저작권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함

### 사실관계 및 사건 개요

- 원고 ECAD는 1973년 설립된 브라질 내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수집 및 배포를 위한 집중관리단체임.<sup><1></sup>
- 피고 A.M.S Empreendimentos Hoteleiros LTDA는 리우데자네이루 지역에서 호텔들을 운영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임.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호텔 객실 및 호텔 내 공용공간에 설치된 TV나 라디오 장비를 통해 공중송신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즉시 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함.

<1> 저작권 수집 및 배포를 위한 중앙국(Escritório Central de Arrecadação e Distribuição)으로 번역할 수 있으며, BRAMUS, AMAR, SBACEM, SICAM, SOCINPRO 및 UBC의 6개 파트너 조직과 ABRAC, ANACIM, ASSIM 및 SADEMBR 준회원 조직으로 구성됨.

- 이에 리우데자네이루 지방법원은 저작권료에 대한 지급 없이 호텔 내 설치된 송신장치를 통해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들이 송신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BRL 21,599.2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금액을 지불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령함.
-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관해 양 소송 당사자들은 동시에 항소를 제기함.
  - 원고는 저작권 및 인접권에 관한 법률 제9,610호/1998의 제105조에 따라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예방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호텔 내 설치된 송출 장비를 제거할 것을 요구함.
  - 한편 피고는 호텔 내 객실은 손님의 개인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되는 만큼, 호텔은 저작권 수집이 필요한 저작물들을 공중송신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 주법원의 판단

- 2019년 9월 21일 리우데자네이루 주법원 재판부는 본 사안의 주된 법적 쟁점은 호텔 객실과 호텔 내 공용공간에서의 TV 및 라디오 장비를 통한 저작물의 공중송신 행위가 저작권료 징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이며, 이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과는 다르게 피고의 주장을 인용함.
  - 원고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들이 호텔 내 장비들을 통해 공중송신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어떠한 저작물들이 이용되었는지를 증명하지 못함.
  - 또한 원고는 호텔 객실과 호텔 내 공용공간을 구분하지 않고 저작권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개인 및 민간 주파수 영역과 집단 및 공공 주파수 영역을 차별화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동법 제68조에서는 공중송신의 정의와 이에 해당하는 공공장소에 대한 예시

를 열거하고 있으나, 개별화된 객실들을 공공장소로 확장하여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합리성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판단하며 일련의 판례를 인용함.

- 브라질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ECAD가 저작물 이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ECAD 가입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숙박 시설에서 집단 및 공공 주파수 영역을 활용한 저작물의 공중송신 행위에 대해 ECAD는 저작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없음.<sup><2></sup>

- 또 다른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동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법해석학적 측면에서 이를 좁게 이해해야 하며, 따라서 숙박 시설 내 객실을 본질적으로 공공장소로 정의하는 것은 저작권 수집에 있어서 합리성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판단함.<sup><3></sup>

- 이에 재판부는 손님에 의한 TV 또는 라디오의 사용은 저작권료 지불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을뿐더러 이에 대한 지불은 라디오 또는 TV 방송국을 통해 사전에 이루어졌음을 고려하여 피고의 항소를 승인하고 손해배상 청구 결정을 기각함.

- 호텔 객실은 안락함을 제공하며 개인 정보 보호를 추구하는 손님의 확장된 주거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대로 이를 공공장소라고 볼 수 없음.

- 또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공공장소에서 어떤 저작물이 이용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음.

---

<2> RESP No. 556,340 / MG (2004.10.11.)

<3> RESP No. 1,025,554 / ES (2009.03.10.)

## 평가 및 전망

- 해당 판례는 브라질 내 음악저작물의 집중관리단체인 ECAD가 저작권료 지급 규범을 확립하기 위해 제기해오고 있는 일련의 소송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음.
  - 지난 저작권 동향 제9호에서 소개한 바대로 ECAD는 저작권료 지급 기준 및 저작권료 지급 발생 사례의 축적을 위해 분쟁이 있는 사안마다 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함.
  - 이러한 ECAD의 소송 제기에 대하여 과도한 소송권의 남발이라는 비판이 브라질 내에 존재하며 매우 엄격한 저작권료 지급 규정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ECAD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저작권에 관한 관행 및 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해당 사안에 있어서도 호텔 내 객실을 공공장소로 보지 않고 객실 내 장비를 통해 공중송신된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저작권료 지급 사실이 발생하지 않음을 재판부가 확인하였으나 ECAD는 가능하면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향후 대법원에서의 결정에 따라 이전까지 축적된 판례대로 호텔 내 객실을 공공장소로 볼 수 있을지 혹은 새로운 판례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규범 창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 자료

<https://www.conjur.com.br/2019-set-21/hotel-nao-direitos-autorais-uso-tv-radio-quartos>

<http://www1.tjrj.jus.br/gedcacheweb/default.aspx?UZIP=1&GEDID=0004EA6873F64902146E47DEC7F05A840970C50B14365C53&USER=> (판결문)